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별표 3]

자수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준

감경대상	감경사유	부과기준액	부과기준액 감경기준
1. 법 제68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자수한 경우 가. 금전·물품 등의 제공을 알선·권유·요구하는 행위 나. 금전·물품 등이 제공된 각종 모임·집회 및 행사를 주관·주최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 등이 제공된 각종 모임·집회 및 행사에 참석할 것을 연락하거나 독려하는 등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하는 행위	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금전·물품 등의 제공사실을 알게 된 후 고발 등 조치(수사기관이 알게 된 후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까지 자수하였으나 금전·물품 등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일시·장소·방법·상황 등을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자세하게 알리지 않은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5배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경위, 자수동기와 시기, 위탁선거에 미치는 영향 및 조사에 협조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감경할 수 있음.
	나. 고발 등 조치 후 자수한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였으나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고 자수한 경우	가. 제1호의 감경사유 가목과 같음.	제공받은 가액의 2배	
	나. 제1호의 감경사유 나목과 같음.	제공받은 가액의 5배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였으나 금전·물품 등을 우편·운송회사 등을 통하여 본인의 수령의사와 무관하게 제공받은 사람이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자수한 경우	가. 제1호의 감경사유 가목과 같음.	제공받은 가액	
	나. 제1호의 감경사유 나목과 같음.	제공받은 가액의 2배	

주: "고발 등 조치"란 관할위원회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